

공 보

제612호 2017. 9. 27.(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403호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4
거창군 조례 제2404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거창군 조례 제2405호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15
거창군 조례 제2406호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2
거창군 조례 제2407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6
거창군 조례 제2408호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34
거창군 조례 제2409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거창군 조례 제2410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	45
거창군 조례 제2411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1
거창군 조례 제2412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57
거창군 조례 제2413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60
거창군 조례 제2414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거창군 조례 제2415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	71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32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74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16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3-164, 3-16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87

거창군 고시 제2017-117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92

거창군 고시 제2017-119호 도로명주소 고시 93

거창군 고시 제2017-12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취소 고시 9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1031호 도로지정 공고 96

거창군 공고 제2017-1033호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8

거창군 공고 제2017-1034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9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116

거창군 공고 제2017-1038호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18

거창군 공고 제2017-1041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41

거창군 공고 제2017-1045호 2020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재열람공고 163

거창군 공고 제2017-1047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81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164

거창군 공고 제2017-1047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81호선)사업 준공검사 필증 165

거창군 공고 제2017-1047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66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166

거창군 공고 제2017-1047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66호선)사업 준공검사 필증 167

의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03호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거창군수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거창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라. 상환기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거창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거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거창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거창군수는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거창군에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 호

귀하

거창군수(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거창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5. 상환기간
6. 상환계획
7. 담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거창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거창군수는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거창군수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용자재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거창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93
----------	---------

제출연월일	2017. 8. 2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 이유

법률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불편·부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근거 없이 의무 부과 내용 삭제함(안 제6조, 별지 제5호서식)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근거: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에서는 군수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일반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삭제함.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안 제1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7. 28.~8.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1): 합천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04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0명”을 “19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u>200명</u> 이상이어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u>190명</u> -----</p>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94
----------	---------

제출연월일	2017. 8.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연서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완화함(안 제2조)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190명 이상’으로 개정함.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6~8. 16.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완료(11): 밀양,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산청, 의령, 함양, 합천, 통영, 하동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05호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옥·내외 메뉴판 등 시설개선 사업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고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남/여)																		
<p>1. 사 업 명:</p> <p>2. 소요자금(실소요금액):</p> <p>3. 신청금액:</p> <p>4. 현황(규모·시설)</p> <p style="margin-left: 20px;">가. 규 모:</p> <p style="margin-left: 20px;">나. 시 설:</p> <p>5. 사업계획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수 량</th> <th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합 계</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6. 그 밖의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 청 인 (인)</p> <p>첨 부: 견적서 사본 1부</p>				명 칭	수 량	합 계													합 계		
명 칭	수 량	합 계																			
합 계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7~76
----------	---------

발의일자	2017. 8. 22.
발 의 자	표주숙·김향란·강철우 이홍희·변상원·박희순 의원(6인)

1. 제안이유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안 제4조)
- 라.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의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8. 25.~8.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06호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거창군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군수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의안 번호	2017~77
----------	---------

발의일자	2017. 8. 22.
발 의 자	강철우·이홍희·이성복 표주숙·박희순 의원(5인)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능력 개발을 위한 적용범위, 절차,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마. 장애인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바. 장애인공무원 지원방법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8. 25.~8.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07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지원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5.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은 제외한다.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 ③ 자활계정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한도액
 - 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 5천만원
 - 나. 개인: 2천만원
 2. 용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양성평등계정
3. 자활계정
-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은 해당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노인 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
성을 가진 사람 2명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사회복지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자활지원사업 소요경비
- 관련 조문
 - 제5조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 제6조 양성평등계정의 용도
 - 제7조 자활계정의 용도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노인복지	20	20	21	21	22	104
	양성평등	20	20	21	21	22	104
	자활지원	90	90	92	92	94	458
	계	130	130	134	134	138	666

3. 관련 의견

-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여
- 노인복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적인 지원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손 용 모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안 번호	2017~95	제출연월일	2017. 8. 2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통합
-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 기금의 재원을 정함(안 제4조)

- 국·도비 보조금, 군·군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등

다. 기금의 계정별 용도 및 지원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노인복지계정: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
- 양성평등계정: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 자활계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각 호의 사업 등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계정별 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이자율이 높은 예금의 관리 등

마.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제14조)

- 위원구성, 위촉해제,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가용기금 130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7. 25.~8.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08호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 각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2.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의용소방대 임무수행 활동 경비 등
- 관련조문: 제3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 비용(a - b)	14	14	14	14	14	70
세출	국 비					
	군 비	14	14	14	14	70
	소계(a)	14	14	14	14	70

3. 관련 의견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군 및 도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 지원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요구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의용소방대 임무수행 활동비(도 및 군 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 14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의안 번호	2017~98
----------	---------

제출연월일	2017. 8. 2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거창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함.

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 적용함.

다.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라. 포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18년부터 본예산 14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7.~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제정현황

○ 제정완료(8): 창원시, 함양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산청군, 고성군

○ 입법예고(1): 창녕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09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 제9조”를 “제5조 및 제9조”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를 “통합방위협의회와 거창군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 20명 이내로”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진주보훈지청장”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
②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2.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둔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협의회”를 “협의회 및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거창군 <u>통합방위 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심의사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u>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u></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u>위원 20명 이내로</u>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6. (생략) 7. <u>진주보훈지청장</u> 8.~10. (생략)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⑦ (생략)</p> <p>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u>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u>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p>	<p>제1조(목적) ----- 제5조 및 제9조-----<u>통합방위 협의회와 거창군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u>-----</p> <p>제2조(심의사항) ----- ----- 1.~3.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20명</u> <u>이내의 위원으로</u>----- ----- ② ----- ----- 1.~6. (현행과 같음) 7. <u>경남서부보훈지청장</u> 8.~10. (현행과 같음) 11. -----<u>사람</u> ③~⑦ (현행과 같음)</p> <p>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 ② <u>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u> ③ <u>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p> <p>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p> <p>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p> <p>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p> <p>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p> <p>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p> <p>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p> <p>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p> <p>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p> <p>⑤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p> <p>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p> <p>⑦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p> <p>제6조(거창군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p> <p>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p>	<p>1.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p> <p>가.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p> <p>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p> <p>2.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p> <p>가.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p> <p>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p> <p>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둔다.</p> <p><삭 제></p> <p>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p>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기획감사실-11352호(2016.08.23.)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경비
통보」에 근거하여(위원회 참석수당 70천원)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민간위원 7명을 대상, 분기 1회(총 4회) 회의 추진 시 연 1,960천원의
비용이 필요함.

4. 작 성 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99
----------	---------

제출연월일	2017. 8. 2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경상남도의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관한 보완요청 사항과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의 기관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

-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협의회 심의사항 삭제
- 군·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 통합방위예규 적용규정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함(안 제3조제2항제7호)

- 진주보훈지청장 ⇒ 경남서부보훈지청장

다.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제2호)

-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 분야별 지원반: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에 반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

※ 경상남도의 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보완요청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7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17년도 본예산 사무관리비 2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7. 24.~8.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2): 거제시, 김해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10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거창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장현대화 사업,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용허가 취소를 신고한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사용료의 징수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가조시장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110-13 일원
위천시장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47-1 일원
신원시장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2-4 일원

[별표 2]

사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장 옥	제공미터당/일	90원
노 점	제공미터당/일	60원

※ 비고

1.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 이동좌판을 말한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00
----------	----------

제출연월일	2017. 8. 2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 이유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불일치하거나 재기재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제4조)

○ 시장을 사용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점은 예외.

○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사용제한 가능하다.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제7조, 별표 2)

○ 사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징수

마.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바. 법령의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구 제2조~제6조, 제7조2항·제9조·제10조3항·제12조1항·제13조·제14조2항, 제15조~제19조, 제22조)

※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5조~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5조, 제97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7.~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5): 고성, 사천, 진주, 창원, 하동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11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아림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림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의 출연금

4.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림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림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8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아립 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따라 수립된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아림예술제 행사 등에 지원
- 관련 조문: 제6조 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군비	7,500	7,500	7,500	7,500	7,500	0
	소계(a)	7,500	7,500	7,500	7,500	7,500	0

3. 관련 의견

-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액(500,318천원) 및 이자발생액(7,500천원)에 대하여 1년마다 기금은 예치하고, 그 이자 발생분 내에서 사업추진
- 따라서 기존 조성된 기금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며 별도의 출연금은 발생하지 않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기금 예치: 500,318천원
-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이자분): 7,500천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유 태 정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안 번호	2017~96
----------	---------

제출연월일	2017. 8. 2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운용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아림예술제, 아림예술제위원회

다.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재원: 국비·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등
- 용도: 아림예술제 행사, 아림예술제 진흥사업 등

마.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
- 해당연도 운용이자의 수익범위에서 집행

바.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제12조)

- 위원회 구성, 위촉해제, 위원장 직무, 운영, 간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가용기금 7,50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7. 26.~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12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u></p> <p>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단서 신설></u></p> <p>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p> <p><u>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 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u></p> <p>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 ----- ----- -----</p> <p><u>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 ----- ----- ----- ---</p> <p><u><삭 제></u></p>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01
----------	----------

제출연월일	2017. 8. 2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 이유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법령과 다르게 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조례 규제개선 50선, 위임조례(규제완화) 정비과제

2.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함(안 제12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

※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삭제함(안 제17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 위임없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18.~8. 0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5): 김해, 사천, 함안, 창원, 함양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13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1. 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 부서장
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2조(설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국비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소계(a)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세입	국비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소계(b)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1,392백만원
 - ※ 매년 5퍼센트 정도 사업비 감액
- 수질오염총량관리비: 52백만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2,865백만원
- 상수원관리사업비: 133백만원

작성자: 환 경 과 장 최 정 제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02
----------	----------

제출연월일	2017. 8. 2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 이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재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2.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둠.(안 제2조)

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함.(안 제4조)

라. 법령 불일치 및 중복·재기재사항 삭제함.(구 제3조~제12조)

- 회계연도, 세입·세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금고설치, 자금의 전용금지,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 예비비, 결산 및 보고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6조·제9조·제50조, 「지방회계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국비 4,442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6.~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 입법 예고(1): 진주시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14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42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다만,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3.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경량구조의 관리 사무소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경감 대상자 건축물
5.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2층을 설치

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와 경량철골, 파이프 구조 등 건축 구조가 경미한 구조로 벽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6. 가설건축물인 경우

7.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p>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 ----- ----- 1.----- ----- ----- 2.----- ----- ----- 3.----- -----(다만, 영 제115조의4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4.----- -----</p>
<p>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u>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 한다.</u></p>	<p>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 ----- ----- ----- ----- ② <u>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다만,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u> 2. <u>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u> 3. <u>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u>

설치한 경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과태료 경감 대상자 건축물

5.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와 경량철골,
파이프 구조 등 건축 구조가 경미한
구조로 벽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6. 가설건축물인 경우

7.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78
----------	---------

발의연월일	2017. 8. 22.
발 의 자	김향란·이성복·이흥희 최광열·권재경·박희순 의원(6인)

1. 제안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른 과정에서 발생한 이행 강제금의 비율 완화로 축사 농가의 부담을 줄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의 조례정비 등을 통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국가정책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사안임.

(소규모 및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주요내용

가.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한시적 완화(안 제42조의2제1항제3호)

○ 무허가 건축물 100분의 70 ⇒ 다만, 무허가 축사인 경우 100분의 60 적용

※ 한시적 적용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6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12516호, '14.3.24 및 환경부령 제599호, '15.3.25)

나.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사항 항목 추가(안 제42조의3제1항제2호)

○ 가설건축물 ⇒ 자진신고·천재지변·주민 공동소유 건축물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15조의4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8. 25.~8.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1): 합천군

(7) 도외 개정완료(19): 경산시, 고양시, 공주시, 광명시, 계룡시,
강진군, 금산군, 나주시, 남원시, 담양군, 양구군, 이천시,
장수군, 완도군, 음성군, 장흥군, 진도군, 화성시, 횡성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15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각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97
----------	---------

제출연월일	2017. 8. 2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 축소로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정관 작성 규정 삭제(구 제2조제2항, 제3조)

○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 후 군수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아니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

나. 협의회 재정 관련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운영 조항 삭제(구 제9조)

○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직이므로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그 밖의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에 맞춰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19.~8. 0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 완료(5): 남해, 하동, 창녕, 함양, 합천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9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232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활계정에서 용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용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3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 능력
5. 신청자의 사회복지 관련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군수는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교부) 군수는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활계정 자금지급)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활계정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자활계정 용자금 상환 및 상환방법) ① 자활계정의 용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2.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

제8조(자활계정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용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일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한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계정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계정 용자금의 감면) ① 군수는 자활계정의 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용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개인)

1. 성 명(성별):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 업 목 적:
6. 사 업 개 요:
7. 소요경비재원:

총 사 업 비	지 원 액	자 체 부 담 액	후 원 금	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따로 붙임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기관·단체)

- 1.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별):
소재지: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채용계획

총사업비	지 원 액	자 부 담	자부담 방법	비 고

사. 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따로 붙임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 기간: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5.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일 정	계 획	세부추진 내용

6. 기대효과

7. 소요예산

(단위: 천원)

지 출 항 목	총 사 업 비				산 출 기 초
	계	기금지원	자부담	그 밖에	
합 계					
기금지원					
강사료 원고료 홍보비 · ·					
자부담					

[별지 제5호서식]

단체(법인) 현황

단 체 명	(한글) (영문)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소재지	(우편번호)		
연 락 처	(☎) (E-mail 주소) (팩스)		
창립연월일		등록관청	
설립형태		회 원 수	
상근직원수		사무실규모	
설립목적			
주요사업			
정기간행물	(발간주기)		
가입 단체			
회원 단체			
지 부 및 지회현황			
그 밖의 사항			

- ※ 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임을 명시
 2. 창립연월일은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기일, 설립형태는 ○○법 제○조 제○항에 의해 법인등록, ○○부 산하 법인등록 등
 3. 비등록단체일 경우 비등록임을 등록관청란에 명시
 4. 회원수는 군 단체의 경우 산하 회원수를 포함하여 기록
 5. 상근직원란에는 상근직 직원수를 기재하되,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록
 6. 사무실 규모란에는 면적(제곱미터) 임대형태를 기록(전세, 월세, 무료임차, 자체소유 등)
 7.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정관(회칙)에 규정된 내용 모두 기재
 8. 주요사업란에는 현재중심으로 기재하고,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록
 9. 회원단체란이나 지부·지회란에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 수를 기록
 10. 그 밖의 사항란은 주요임원(대표자, 부회장, 감사, 이사 등)의 성명, 연령, 최종학력 및 단체활동 주요경력 및 단체 수상경력, 보도사항 등 특기사항 기재(별지 기재 가능)

[별지 제6호서식]

사업(활동)실적

□ 신청 단체명 :

사업명	일시	참석 인원	주요내용	성과	비고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사업계획 요약서

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명		주 소		
	설립일			총예산 (해당연도)	천원	
	상근직원	사무국 지 부	명 명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사업분야		
	사업추진 지역, 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요약) ※일정별 사업계획을 개조식 작성					
기대 효과						
사업 규모	총사업비	천원 ()퍼센트	신청예산	천원 ()퍼센트	자부담	천원 ()퍼센트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단체명/성별):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2. 상환통지금액: 금 원

원금	이자	비 고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한: 20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법인·단체명/성별):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2. 감면요청금액: 금 원

원금	이자	비고

3. 감면요청사유:

4. 붙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17~65
----------	---------

제출연월일	2017. 8. 16.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나. 지원결정 및 교부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마. 자활계정 자금지급, 용자금 상환 및 상환방법, 용자금 연장, 용자금 감면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산조치: 가용기금 130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5.~8.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3-164, 3-16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군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164, 소로3-165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합니다.

2017. 09. 22.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구분	종 류	명 칭	위 치	시행규모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당초	교통 시설 (도로)	월천지구(소로3-164, 3-16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일원	소로3-164, 3-165호선 L=393.0m, B=6.0m	2015.09. ~ 2017.12.31	거고 제25호 (‘02.06.10)
변경	교통 시설 (도로)	월천지구(소로3-164, 3-16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일원	소로3-164, 3-165호선 L=393.0m, B=6.0m	2015.09. ~ 2017.12.31	거고 제25호 (‘02.06.10)

2.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나)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3. 도시계획시설(도로) 시행 조서

구분	종류	명칭	위치		시행 규모						시행 구간		최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당초	군 계획 도로	대동리 (소로3-164, 3-165호선)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	동변	소로	3	164	228	6	1,728	거창읍 동변리 514-2	거창읍 동변리 1164-2	거고 제25호 ('02.06.10)	2015.09. ~ 2017.12.31
						3	165	165	6	1,275				
변경	군 계획 도로	월천지구 (소로3-164, 3-165호선)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	동변	소로	3	164	228	6	1,728	거창읍 동변리 514-2	거창읍 동변리 1164-2	거고 제25호 ('02.06.10)	2015.09. ~ 2017.12.31
						3	165	165	6	1,266				

4. 관계도면 : 게재 생략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5)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 별도첨부

[별첨]

○ 소로3-164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8,424	1,728					
1	거창읍 동변리	514-2	도	53	24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재준			
2	"	1164-2	도	6588	210		국(건설부)			
3	"	514-4	대	55	55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재준			
4	"	514-3	도	56	5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재준			
5	"	512-6	대	56	56		거창군			
6	"	511-1	도	131	131		"			
7	"	512-5	대	16	16		"			
8	"	511-2	대	74	74		"			
9	"	211-2	대	36	36	거창읍 동변리 471	표재성			당초
	"	211-2	대	36	36	거창읍 동변리 211	유현순			변경
10	"	205-1	대	24	24		거창군			
11	"	211-1	도	72	61		"			
12	"	210-1	대	27	27		거창군			
13	"	209-1	대	71	71		거창군			
14	"	213-1	도	27	21		거창군			
15	"	213-2	대	24	24	거창읍 동변리 213	박성근			당초
	"	213-2	대	24	24		거창군			변경
16	"	215-3	대	331	12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계 영상공과종중			
17	"	215-8	대	153	153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계 영상공과종중			
18	"	216-1	대	5	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계 영상공과종중			
19	"	215-7	대	44	44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계 영상공과종중			
20	"	227-2	대	250	235		거창군			
21	"	227-1	도	126	86		"			
22	"	226-2	도	34	23		"			
23	"	226-3	전	171	171		"			

○ 소로 3-16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9,734	1,275					당초
합계				29,734	1,266					변경
1	거창읍 동변리	1160-30	구	21,746	30		국(건설부)			
2	"	1164-2	도	6588	431		국(건설부)			
3	"	187-3	도	30	19		거창군			
4	"	241-3	창	33	33		거창군			
5	"	188-1	도	29	29		거창군			
6	"	240-2	답	34	34		거창군			
7	"	188-2	답	18	18		거창군			
8	"	240-1	도	10	10		"			
9	"	239-1	대	12	12		거창군			
10	"	189-3	답	20	20		거창군			
11	"	190-2	답	1	1		"			
12	"	190-1	도	69	19		"			
13	"	191-1	도	37	19		"			
14	"	235-2	대	28	28		"			
15	"	235-1	도	5	5		"			
16	"	234-6	전	25	25		"			
17	"	234-4	도	6	6		"			
18	"	192-2	대	30	30		"			
19	"	234-5	전	89	89		"			
20	"	192-1	도	10	10		"			
21	"	234-3	도	5	5		"			
22	"	233-1	도	3	3		"			
23	"	233-2	대	16	16		"			
24	"	193-6	대	6	6		"			
25	"	193-4	도	7	7		"			
26	"	193-5	대	54	5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105동1101호	표영길			당초
	"	193-5	대	54	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105동1101호	표영길			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7	“	231-4	대	19	19		거 창 군			
28	“	193-3	도	68	6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105동1101호	표 영 길			
29	거창읍 동변리	231-3	도	9	9		거 창 군			
30	“	194-2	대	46	46		“			
31	“	194-1	도	19	19		“			
32	“	195-3	대	61	61		“			
33	“	195-2	도	20	20		“			
34	“	227-2	대	250	15		“			
35	“	227-1	도	126	23		“			
36	“	226-2	도	34	5		“			
37	“	226-3	전	171	31		“			

거창군 고시 제 2017 - 117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과수원 조성(사과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 업 비	사업 예정기간	사 업 시 행 자	
	지 적	개간승인면적			주 소	성 명
신원면 중유리 산141-1(임)	13,560m ²	▶ 당초: 4,938m ²	▶ 당초: 12,100천원	2017. 2. 14. ~ 2018. 2. 13.	경남 거창군 웅양면 원촌5길 45	김수호
		▶ 변경: 4,934m ²	▶ 변경: 45,364천원			

3. 사업효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7년 9월 22일

거 창 군 수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2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5길 50 외 7건(부여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50-94	2009-12-28	2017-09-27	남하면 지산리를 지나 가조면으로 가는 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7, 56-6, 6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61-3	2009-04-01	2017-09-27	영천강가의 양지 바른 곳이라하여 불려진 강양마을의 이름이 반영된 다섯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66-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67-4	2009-04-01	2017-09-27	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0-10, 10-12, 10-13, 13-14, 13-17, 13-19, 13-5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4길 62	2009-04-01	2017-09-27	거창읍 천내 가장 동쪽에 있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네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385-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1098-32	2009-04-01	2017-09-27	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233-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262-203	2009-12-28	2017-09-27	침녕쿨의 뿌리에 속한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30	2012-05-22	2017-09-27	거창일반산업단지 명칭 반영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5-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5길 50	2016-04-20	2017-09-27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취소 고시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산67번지” 개간사업 시행자 안태호가 득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거창군 고시 제2016-49호(2016. 5. 25.)】』 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취하원 제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2. 사업 취소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사업예정 (승인)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산67	69,822m ²	4,930m ²	18,260천원	2016. 5. 25. ~ 2017. 5. 24.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남불1길 254	안 태 호

3. 사업 승인취소 사유: 사업시행자 원에 의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

2017년 9월 26일

거 창 군 수

제 2017 -1031호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위치의 도로를 지정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도로지정공고

나.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제1항

다. 도로지정현황

건 축 신 고 현 황					
대지위치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지번	728-1(과)
건축주	이종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966. 01. 10.	허가번호	2017-도시건축과-신 축신고-243
도 로 지 정 현 황					
도로길이	48.5m	도로너비	6.0m	도로면적	291.0㎡
이 해 관 계 인 동 의 현 황					
관련지번	동의면적 (㎡)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91.0	2017.9.21.	이종희	1966. 0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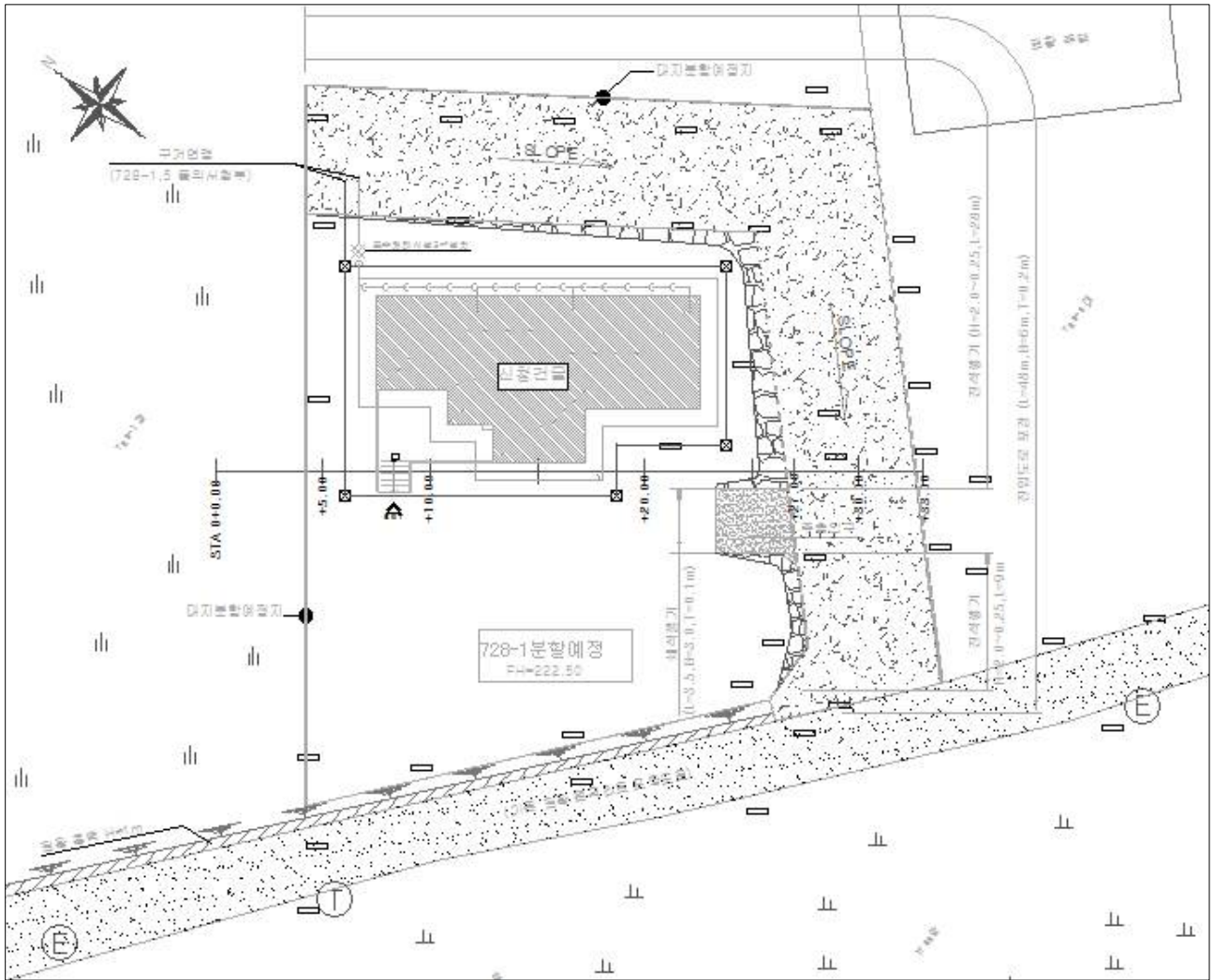
라. 공고기간 : 2017.9.21 ~ 2017.10.20. (30일간)

마. 공고방법 :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바. 도로지정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거창군청
도시건축과 (☎940-3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경상남도 거창군수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임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안 제2조·제3조·제8조)
 -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위원수·위원자격, 수질검사 실시횟수 등 「수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
- 위원의 임기 중 연임 제한 규정(안 제3조)
- 수질검사 공표방법 및 공표 시 포함사항 삭제(안 제9조·제10조)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별개의 사항으로 삭제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순서 조정(안 제2조·제4조·제5조·제6조)

4. 개정 조례안: 따로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하는 곳: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수도사업소 **【☎055-940-8420, fax 940-8409】**

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055)940-8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견	비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09. .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제안이유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임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안 제2조·제3조·제8조)

-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위원수, 위원 자격
- 수질검사 실시 횟수, 실시 기관 등

나. 위원의 임기 중 연임 제한 규정(안 제3조)

다. 수질검사 공표방법 및 공표 시 포함사항 삭제(안 제9조·제10조)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별개의 사항으로 삭제

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순서 조정(안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29조·제30조
-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9. 22. ~ 10. 12.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군수(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2조(구성) 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p>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므로 수정함 ◦ 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수정함 ◦ 법 제3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그 기능은 법 제30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음 ◦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 조항 다음으로 옮겨 제6조로 규정함 ◦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p>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의하여 위원이 되는 것으로 임기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수정함 .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위촉·해촉 규정 다음으로 옮겨 제4조에 규정함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위촉·해촉 규정 다음으로 옮겨 제5조에 규정함 ◦ 위촉 해제 규정은 위촉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제3조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신 설></p> <p><신 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성격상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촉해제사유를 규정함</p> <p>◦ 안 제4조에서 옮겨 규정하고, 표현을 입법례에 맞게 수정함</p> <p>◦ 안 제5조에서 옮겨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맞도록 회의 소집→개최 원칙→의결의 순서로 수정함</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8조(수질검사) ① 수돗물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 대상·건수·항목·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p>	<p>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p> <p>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3조제4항에서 옮겨 규정하고, 원안과 같이 상수도 업무 담당 주사로 규정할 경우 그 직위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수정함 ◦ 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으로서, 법 제29조, 제53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질검사와는 다른 제도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군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공보 2.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신문 3.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그 밖에 군민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 등</p> <p>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포함사항)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민들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관리책임자의 실명을 표기한다. 2.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는 채수지점의 주소를 표기한다. 3.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표기는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한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일비·여비의 지급 근거를 두고 있어 별도로 규정 실익이 없음</p> <p>◦ 일반적인 운영세칙의 입법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p>

관 계 법 령

□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할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335호, 2016.7.12., 일부개정]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타법개정]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타법개정]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

(管末)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정) 1977.05.12 조례 제 364호

제 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 6. 29 조례 제616호〉

제 3조 (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6. 29 조례 제616호〉

제 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98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제10조 (생략)

※**법제처 검토의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도록 함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9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7-20호(2017.2.2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97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 09. 25.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97호선)	거창읍 가지리 401-7번지	소로	2	97	100	8.0	835	경고 1978-103호 (1978.03.20)	2017.03.08 ~2017.09.18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9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7-20호(2017.2.2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97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 09. 25.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 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군계획 시설: 교통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97호선)	거창읍 가지리 401-7번지	소로	2	97	100	8.0	835	경고 1978-103호 (1978.03.20)	2017.03.08 ~2017.09.18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개정된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수정 :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구 조례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1호~ 제3호, 제10조~제13조)
 -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기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 회계관계공무원, 관계규정의 준용 등
-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내용을 자구 수정함(안 제4조)
 - 위원회 명칭 및 제목 수정
 -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규정 신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6조)

- 위원회·기금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위원회·기금 명칭을 개정 조례에 따른 위원회·기금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50132),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055-940-3582, FAX:055-940-3579, 이메일: swing0202@korea.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지 가능

붙임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 ② 기금은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관광과장, 거창읍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

는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u>옥외광고정비기금</u> 설치 및 운용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균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u>옥외광고발전기금</u> 설치 및 운용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6조의2에 따라 거창군 <u>옥외광고발전기금</u>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법령 개정으로 기금 명칭 변경되어, 제명 수정 (이하 기금 명칭 변경 동일) ○ 자구 수정 ○ 법 제6조의 2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로 따로 정할 사항을 위임한 바 없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조(기금의 용도)</p> <p>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p>	<p>제2조(기금의 용도) ①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u>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p>	<p>○ 법 제6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p> <p>○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함</p>
<p>제4조(기금의 관리)</p> <p>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p> <p>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p> <p>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p> <p>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p> <p>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p> <p>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p>	<p>○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자구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p>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관광과장, <u>도시건축과장</u> 2. <u>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u> 3. <u>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u> 4.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u>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u>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p>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u>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u>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관광과장, <u>거창읍장</u> 2. <u>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u> ⑤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조례 제5조와 제6조를 통합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반복재기재 사항 삭제. ○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및 구성규정에 따라 자구 수정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 구성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u>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p>	<p>○ 자구수정</p> <p>○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둠</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② <u>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 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u>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u></p> <p><삭제></p>	<p>○“담당주사”는 <u>법령 및 조례 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도록 수정함</u>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p> <p>○「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규정 사항으로 삭제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회계관계공무원)</p> <p>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p> <p>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주사</p> <p>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기금결산)</p> <p>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p> <p>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p> <p>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p>	<p><u><삭제></u></p> <p><u><삭제></u></p>	<p>○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지방회계법」 제91조 규정사항으로 삭제함.</p> <p>○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재정법」 제53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사항으로 삭제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p>	<p>○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제1항 규정사항으로 삭제함.</p> <p>○ 조례에서 지침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p> <p>○ 기금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기금 및 위원회를 개정 조례에 따른 기금 및 위원회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함.</p>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

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 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에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지방회계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재무제표에는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

야 한다.

제6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

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관련 자치법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계획조례」
2. 개정이유 : 완화법령위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완화 과제정비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 055-940-3583, 팩스 : 055-940-3579, 이메일: tesla1004@korea.kr

붙 임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10.
제 출 자	도시건축과장

1. 제안이유

법령위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완화 과제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내 공동주택 면적 비율 규제 완화(안 별표 7~별표 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8제1호나목, 별표 9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라 적용, 조례로 위임되어 정한 규제강화 부분 삭제함.
- (현행) 70퍼센트 ⇒ (변경) 90퍼센트

나. 상업지역(중심, 일반, 유통) 내 일반·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정함(안 별표 7, 별표 8, 별표 10)

-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

다.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안 제53조제6항·제58조제3항)

- 기존에 정한 건폐율·용적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 다만 법 제77조·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용적율의 최대한도 초과할 수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별표 11
-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09. 22. ~ 2017. 10. 12.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6) 도내 개정완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p> <p>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p> <p>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p> <p>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p> <p>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p> <p>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p> <p>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p> <p>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p> <p>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p> <p>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p> <p>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p> <p>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p> <p>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p> <p>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p> <p>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p> <p>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p>	<p>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p> <p>① ----- -----</p> <p>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p> <p>②~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p>	<p>규제완화 과제 정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제5항제1호 단 서에서의 최대 한도보다 좁아 짐으로 영 삭 제</p>

<p>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p> <p>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p> <p>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p> <p>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p> <p>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p> <p>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p> <p>②~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u></p>	
---	------------------------------	--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p>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12. ----- ----- ----- 13. ----- ----- ----- 14. ----- 15. ----- 16. ----- 17. ----- 18. ----- 19. ----- ----- ----- 20. ----- 21. -----</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규제완화 과제정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 단서에서의 최대한도보다 좁아짐으로 영 삭제</p>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호 가목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 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위임조례 정비과제(규제완화)

위임 법령 및 조문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정비조문	법령 위임 주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61101 '161101	별표 7 ~별표 10	(별표 8 제1호다목, 별표 9 제1호가목, 별표 10 제1호나목, 별표 11 제1호라목)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으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 등급 등)	'170117 '170117	제53조제6항 제58조제3항	(제65조의2제5항제1호, 제2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기존에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1.] [대통령령 제27570호, 2016.1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를 활용한 궤도주행형 유기사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 등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에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으로 생산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간생략~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4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별표 8] <개정 2017. 2. 3.>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9] <개정 2016. 11. 1.>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개정 2016. 11. 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

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개정 2017. 2. 3.>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주택법」

[시행 2017.11.10.] [법률 제14866호, 2017.8.9., 일부개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8.16., 타법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1.>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 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2.2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2.]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2016.9.12., 일부개정]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본조신설 2014.12.24.]

2020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재열람 · 공고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재열람 · 공고합니다.

1.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가. 목표연도: 2020년

나. 계획범위: 거창군 전역

다. 주요내용: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에 관한 사항(도지사 결정사항)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9. 27 ~ 10. 11

나. 장 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3. 의견 제출방법 : 위 열람 기간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50132/경남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055-940-3583), FAX(055-940-3579), E-mail : tesla1004@ 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공람 가능합니다.

2017. 9. 27.

거 창 군 수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81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6-111호(2016. 11. 1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81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 9. 26.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0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중앙리 (셋별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소로2-81호선) 개설공사	거창읍 중앙리 406-4번지 일원	소로	2	81	98.5	8	851	경고 제103호 (1978. 3. 20)	2016. 11. 10 ~2017. 9. 8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

귀하(중)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명	거창군수	법인등록번호	611-83-0001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준 공 내 용								
사업명칭	중앙리(셋별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81호선) 개설공사							
사업목적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긴급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업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06-4번지 일원			사업량	L=98.5m, B=8.0m			
시행방법	신청인 직영			시행기간	2016. 11. 10 ~ 2017. 9. 8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도	대	전	답	임	구	합계
	면적	27	9		815			851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도로						
	면적	851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개요	851						
소요사업비	435백만원			공사완료일		2017. 9. 8		

2018년 9월 일
거창군수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66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170호(2015. 12. 3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66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 9. 26.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29-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 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군계획 시설: 교통 시설	정장리 (소로3-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읍 정장리 929-20번지 일원	소로	3	66	268	6	1,761	경고 제465호 (1992. 12. 24)	2015. 12. 31 ~2017. 9. 8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

귀하(중)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 명	거창군수	법인등록번호	611-83-0001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준 공 내 용								
사업명칭	정장리(소로3-6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목적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긴급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업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29-20번지 일원			사업량	L=268.0m, B=6.0m			
시행방법	신청인 직영			시행기간	2016. 4. 14 ~ 2017. 8. 23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도	대	전	과	임	구	합 계
	면 적	603	710	148	55	61	184	1,761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도로						
	면 적	1,761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개 요	1,761						
소요 사업비	1,500백만원			공사완료일		2017. 9. 8		

2018년 9월 일
거 창 군 수